

2024학년도 제2학기 성인지교육 실시 안내

<성인지 교육>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에 의거
교원자격증 취득 필수요건으로 대상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
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
I 개요

1. 실시 근거

- 교원자격검정령 [별표 1] 무시험검정 합격기준

(비고) 5. 성인지(性認知) 교육 이수 기준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. 다만,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.

-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※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

※ '성인지 교육 1회' 의 인정 기준은 다음 성인지 교육 주요 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4차시 이상으로 구성하되, 모든 교육 시간(4차시)을 온라인(비대면) 콘텐츠 활용 교육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지양

■ 대학별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 ■

-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
- ② 가정·학교(대학 포함)·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
-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
-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,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

II 이수대상 및 기준

○ **이수대상:**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중, 다음 조건에서 1개라도 해당되는 자

- ① 2024-1학기 성인지 교육을 미이수 재학생
- ② 2024-1학기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학년별 이수 기준을 미충족한 재학생
- ③ 편입학생
- ※ 소속학과 사무실을 통해 2024-2학기 성인지교육 대상자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※

○ **이수기준** ▶ 종합정보시스템(TIGERS+) 교직사정안내에서 학생 본인의 이수기준(횟수) 확인 가능

|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|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|
|---|--|
| · (사범대학) 졸업 전 4회 이수 · (일반대학 교직과정) 졸업 전 2회 이수 | 졸업 전 2회 이수 ※ 2021년 2월 9일을 기준 졸업 전까지 3학기 이상 재학하는 학생만 대상 |

※ 위 기준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,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은 해당령 시행인 20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. 이는 해당일을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 대해서 적용하며, 이 경우 4회를 2회로 본다.(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)

III 교육내용

○ 아래 교육 **모두** 이수 시 “성인지 교육 **1회** 이수” 로 인정

| 차수 | 교육방법 | 교육내용 |
|-------|------|--|
| 대면 | 대 면 | 가정·학교(대학 포함)·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함양 교육 |
| 비대면-① | 비대면 |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|
| 비대면-② | 비대면 |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|
| 비대면-③ | 비대면 |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,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|
| 비대면-④ | 비대면 | 장애인의 성 이해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|

IV 교육 이수방법(대면+비대면 교육 모두 이수 필수)

○ (필수)대면교육

| 대면 교육 (일정 중 택 1) | 구분 | 세부내용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교육내용 | · 가정·학교(대학 포함)·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함양 교육 | | | | |
| | 교육강사 | · 사회과학대학 아동가정복지학과 서종수 교수 | | | | |
| | 교육방식 | · (대면) 집합교육 | | | | |
| | 대 면 교육신청 | · 신청기간: 2024. 10. 14.(월) 10:00 ~ 17.(목) 17:00 · 신청방법: 종합정보시스템 → 수업업무 → 교직원업무 → 성인지교육 신청 → 희망차수 신청 | | | | |
| | 이수요건 | · 1회차~3회차 대면교육 중 1회 참석하여 교육 수강 · 교육시작 후 10분 경과 시 해당 회차 교육이수 불가 | | | | |
| 교육일정 | | 일자 | 차수 | 시간 | 신청가능인원 | 조형예술대학 5호관 강당 |
| | | 2024.11.05.(화) | 1회차 | 17:00-17:50 | 260명 | |
| | | 2024.11.05.(화) | 2회차 | 18:30-19:20 | 260명 | |
| | | 2024.11.12.(화) | 3회차 | 17:00-17:50 | 260명 | |

○ (필수)비대면교육

| 비대면 교육 4강좌 모두 이수 | 구분 | 세부내용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--|--|
| | 교육내용 | ① | ·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: [비정규과목] 2024폭력예방교육(소속단대별) | | | |
| | | ② | ·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: 디페이크 디지털 성폭력 사례 중심으로 | | | |
| | | ③ | ·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,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| | | |
| | | ④ | · 장애인의 성 이해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: 발달장애청소년의 성(학교현장에서의 사례 위주) | | | |
| | 교육방식 | · (비대면) 온라인교육: 동영상 강의 시청 | | | | |
| | 교육신청 | · 별도 신청 필요 없음(대면교육 신청자에 한 해 자동수강가능) | | | | |
| | 이수방법 | ① | · 스마트LMS (◀클릭) → (로그인) → 수강과목(비정규과목) → 강좌 “2024 폭력예방교육” →온라인강의 클릭 | | | |
| | | ②~④ | · 비교과시스템 (◀클릭) → 강좌 “[교직] 2024-2학기 성인지 교육” 검색(🔍) → 온라인강의실 바로가기 → 강좌별 이수 | | | |
| | 이수요건 | · ①~④ 온라인교육 모두 이수 · 교육기간 내 동영상 강의 진도 100% 이수 · 설문조사 완료 | | | | |
| 교육기간 | · 2024. 10. 14.(월) 10:00 ~ 2024. 11. 29.(금) 17:00까지 이수 | | | | | |

V 기타사항

- 2024학년도 2학기에 진행되는 성인지교육은 **교육 횟수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** 실시되는 **추가교육**으로 현재까지 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의 경우는 이번 학기 교육 대상에서 제외
- 학과에서 안내한 2024-2학기 필수 교육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없으나, 현재 학기 기준 성인지 교육 이수가 미달되어 교육이 필요한 경우 **‘2024-2학기 성인지 교육 신청 사유서(클릭)’** 를 **2024. 10. 11.(금) 17시까지 (온라인)제출**. 사범대학에서 사유서 검토 후, 추가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별도 연락 예정
- 성인지 교육 이수 여부는 **2024년 12월 말 학사지원팀 교직사정 안내 시 확인 가능**

(확인방법) [학생종합정보시스템](#) → 수업업무 → 교직업무 → 교직사정안내에서 ‘성인지교육’ 이수횟수 확인
- 편입학 및 재입학자에 대해서는 편입 또는 재입학한 학년의 **입학연도**를 기준으로 적용
 예)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 경우, 2021년에 입학한 학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함
- 신청 및 관련문의는 각 소속 학과 사무실로 문의 요망